

골재채취 촉진법안도 반대한다

- 개발에 따른 파괴는 최소화해야-
- 보전과 개발의 조화 전문부서에 맡겨야-

최근 건설부는 골재채취 촉진법을 마련하기 위하여 「골재채취 촉진법안」을 입법에 고한바 있다.

이에앞서 환경처에서는 자연환경보전법을 만들기 위하여 공청회까지 가졌었는데 이 자연환경보전 법안은 보전우주의 개발을 제한하는 법안이라는데 반하여 이 골재채취 촉진법안은 개발을 촉진한다는 의미에서 두 법안이 상호 반대개념의 입장이라 아니할 수 없다.

그런데 한가지 공통적인것은 그대상지가 주로 산림이란 점과 우리 산주 입장에서는 두가지 법안을 모두 반대하지 않으면 안될 아주 아이러니칼한 입장인 것이다.

우리는 무조건 반대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국토의 65%가 산지로서 어차피 뺀어 나갈 곳이라곤 십중팔구 산지밖에 없음을 잘 이해하는 까닭이다.

그래서 산림청은 전체 산림 650여만ha중에서 130만여ha를 이미 준보전임지로 이 용구분 조사를 하여 타용도로 전용을 가능케하고 있고, 나머지를 보전임지로 정하고 있으나 이 보전임지도 말이 보전임지이지 심지어 골프장까지도 개발이 가능토록 제도적으로 티어 놓고 있는 것이다.

산림청은 이 보전임지의 개념이 희박함으로써 보전임지는 글자 그대로 엄격히 명실 상부한 보전임지로서의 역할을 다하도록 재조사를 하고 있는것으로 알고 있는바 이는 늦은감은 있으나 매우 잘하는 시책이라 할수 있다.

어쨌든 보전과 개발은 조화를 이루어 산업발전에 따른 자연환경파괴를 최소화 하도록 하는것은 당연한 것이다.

모든 분야에서 각기 개별법이 있고 그 개별법은 각각 특성이 있어 그 실정을 누구 보다 잘 아는 전문부서에서 다루어 주어야 하고 또 그러고있거늘 최근의 자연환경 보전법안이나 골재채취 촉진법안은 이러한 원초적인 순리를 무시한채 옥상옥의 법률을 만들어 200만 산주의 권익을 침해하고 아무 보상대책 없는 재산권 침해의 독소조항이 다분히 있기때문에 우리는 이 두 법안에 대하여 모두 반대하지 않을수 없는 입장이다.

다음은 본회에서 골재채취 촉진법안에 대한 반대의견을 관계부처에 제출한 내용이 다—— 편집자.

골재채취 촉진법안에 대한 의견서

1. 종합의견

우리 독립가를 비롯한 전국 200만 산주는 귀부에서 입법예고한 골재채취 촉진 법안에 대하여 골재의 안정적 수급계획을 위한 조치라는 점에서는 이해가 갈수는 있으나 최근의 골재 수급문제는 수도권 및 도심지 주변에 국한된 문제로서 도시계획범상 채취제한으로 인한 원거리 수송에 따른 채산성 악화로 공급 자체가 문제인 것이지, 자원이나 수급상의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전국토의 65%가 산림이요 그 가운데 72%가 사유림입니다. 나무가 1-20여년에 되는것이 아니듯, 우리들 독립가들도 1-2년에 된것이 아니고 수십년을 투자와 정력을 소비하면서 각고 끝에 겨우 국토녹화를 이룬 단계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골재채취지구의 지정, 토지의 수용, 사용, 장관에게 재결권까지 부여함은 골재채취업자 위주의 법안으로 밖에 볼 수 없습니다.

산림은 기암(基岩)과 토석, 그위에 나무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어느곳을 지정할 골재가 나오지 않을곳이 어디 있겠습니까?

골재는 현재 산림법상으로도 토석, 채취등 허가가 적절한 곳이면 얼마든지 허용이 되고 있는데 그 까다롭다는 산림법을 배제하는 옥상옥의 법률을 만들어 현재의 각 개별법과의 마찰은 물론, 모처럼 힘들여 이루워 놓은 조림지 등 산지에 보상대책없이 골재채취로 인한 황폐화와 사유재산권 침해의 우려가 있으므로 이를 반대하는 바입니다.

2. 주요문제 조항 검토의견

● 제 6조 타인 토지에의 출입등에 대하여는 골재채취계획인가를 받은 자 위주의 법안이고 산주 입장에서는 사유 재산권 침해 입니다.

● 제 35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에서 골재채취계획인가가 있는 경우에는 무려 25개항에 달하는 관계법 조항을 의제하는 가운데 산림법, 사방사업법, 조수보호 및 수렵에 관한 법률도 포함됨으로서 옥상옥의 법률안이 되어 있습니다.

● 제 43조 골재채취지구의 지정에서 양질의 골재가 상당량 부존되어 있어 집중 개발이 용이한 지역을 지정토록 되어 있는바, 이는 산림내의 어느곳을 판들 골재가 나오지 않는곳이 없을진데 산주로서는 불안하기 그지없는 것입니다.

● 제44조 수용 및 사용에서 있어 채취장 및 골재채취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토지, 건축물 또는 그 토지에 정착된 물건이나 그 토지, 건축물 또는 물건에 관한 소유권 이외의 권리를 수용, 사용할 수 있도록 한것은 완전한 사유재산권 침해입니다.

● 제45조 복구명령, 제37조의 골재채취적지의 관리조항은 있지만 산지에서의 골재채취는 산림훼손이 전제 되어야 하고 채취후의 원상 회복은 있을 수 없는 바 형식상의 복구 대책에 불과한 것입니다.

3. 결론

이상의 산림관련 주요 부분만 지적하였는바 산림법상 토석채취 허가제도가 있고 앞에서 지적한바와 같이 골재자원상의 문제가 아니라 도심권 내의 채취 제한으로 원거리 수송에 따른 채산성의 문제임으로 보다 깊은 연구검토로 본 법안은 재고 되어야 한다고 보는 바입니다.

1991. 8. 17.

사단법인 한국독립가협회 회장

권 오 진

山林經營 原稿投稿案内

本 山林經營誌 原稿모집을 다음과 같이
案内합니다.

- 其他 建議 등 山林文化
- 會員 住所 變更은 반드시 연락.

1. 原稿의 內容

- 山林經營 情報
- 山林所得增大 事例
- 會員의 成功事例, 體驗手記, 山林所得 源 紹介
- 林業技術 普及에 관한事項
- 會員動靜, 林業界消息

2. 作成要領

- 200字 原稿紙
- 分量제한 없음

3. 原稿接受 : 수시

- ### 4. 기타 : 채택된 원고에 대하여는 소정의 稿料 支給.